

#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510호 2017. 7. 13.(목)

## 훈 령

- 사천시 훈령 제341호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 2
- 사천시 훈령 제342호 사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안전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 36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 831-2217 / FAX 831-6012

# 사 천 시 공 보

제510호(2)

## 훈 령

사천시 훈령 제341호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7년 7월 13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감사 및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 사 천 시 공 보

제510호(3)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회는 이사장, 감사 및 이사(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임기 만료의 2개월 이전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예정되지 않은 결원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임원의 후보자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이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결원이 동시 발생 또는 최초 결원 발생예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단을 최초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시에 둔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공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 관련 단체 임원

# 사 천 시 공 보

제510호(4)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⑥ 공단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시 소속 공무원(시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4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5조(위원회의 존속)** 위원회는 추천된 사람이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6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법령 및 공단의 규정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자 심사
2. 이사장, 감사 및 비상임이사 후보를 시장에게 추천
3. 상임이사 후보를 이사장에게 추천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공단에서 임원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공단을 최초로 설립하는 때에는 시의 공단 설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이 된다.

# 사 천 시 공 보

제510호(5)

③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
2. 위원회의 소집 및 심사결과 처리
3. 그 밖에 위원회의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임원후보자의 모집)** ① 임원후보자는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공단의 인사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개모집 공고, 지원서 접수, 임원후보 추천대상자 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임원 공개모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임원후보자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 다만, 대행 전문기관은 인재채용·인재추천·인사컨설팅 등 인사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와 관련된 상당한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법인이어야 한다.

④ 사장 및 이사장은 우수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시에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채용전문기관, 대학, 관련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임원후보자로 응모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모집공고)** ① 위원회는 임원 임기종료 등 미리 결원이 예상되는 경우 인사절차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모집 및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 사 천 시 공 보

제510호(6)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상 모집 및 공고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 공개모집 공고는 시보, 시 홈페이지, 공단 홈페이지, 지방공기업경영정보포털사이트 및 1개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사천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임용 예정 직위, 선발인원, 응모자격, 직무수행요건, 임용계약 및 보수, 지원서 접수,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 및 발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되 모집공고문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재공고 및 변경공고)** ① 위원회는 최초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결원 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명권자가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같이 재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직무수행요건)** 임원의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은 별표 2와 같다.

# 사 천 시 공 보

제510호(7)

**제13조(제출서류)** 임원으로 응모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
2. 직무수행계획서(기관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
3. 자기소개서
4.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1차 합격자에 한함)
5. 그 밖에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제14조(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공단이 정하는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를 심사한다.

1.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2. 경력·학위 등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3. 과거의 경영실적·경영기간 등 경영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해당 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5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 위원회는 공단이 정한 임원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응모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면접심사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대상자는 1차 서류심사 합격자로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가 면접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최종 임원후보자는 면접심사결과(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

# 사 천 시 공 보

제510호(8)

류심사 결과에 따른다)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최종 후보자 수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서류 및 면접심사 시 응모자 1명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한다. 이 때 소수점은 둘째자리까지 표시하고 나머지는 절사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투표로서 순위를 결정한다.

⑤ 서류심사는 절대평가하고 면접심사는 응모자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한 후 상대평가한다.

⑥ 임원후보 서류심사평가표 및 면접심사평가표는 별표 4와 별표 5에 따른다.

**제16조(임원 후보 추천)** ① 위원회는 공단이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한다.

② 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배수 이상 추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임원후보 추천대상자를 의결한 경우에는 이사장, 감사 및 비상임이사는 시장에게, 상임이사는 이사장에게 임원후보자 추천서(별지 제 2호 서식), 임원추천후보자 인적사항(별첨 3), 임원 세부 추천사유(별첨 2), 임원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 또는 이사장은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 사 천 시 공 보

제510호(9)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 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⑤ 임용권자는 추천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추천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⑥ 임원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사무협조)** ① 위원회는 임원후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또는 당해 공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공단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채용과정 공개)** 임명권자는 임원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후보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공단 임원의 추천업무 처리로 알

# 사 천 시 공 보

제510호(10)

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등을 징구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임원후보자인 경우
2. 임원후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제2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최초 임원 임명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 사 천 시 공 보

제510호(11)

[별표 1]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공고 제0000-00호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임원 공개모집 공고(제10조 관련)

「지방공기업법」 및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방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가지고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을 이끌어 갈 유능한 임원을 모시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00년 00월 00일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 1 임용 예정직위 및 인원

임용 예정직위	임용예정인원	주요 직무내용
이사장	0명	○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을 책임짐.
상임이사	0명	○ 이사장을 보좌하며, 본부장 직무를 겸임 ○ 공단업무 총괄
비상임이사	0명	○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단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

# 사 천 시 공 보

제510호(12)

## 2 임기 및 보수

### 【이사장/상임이사】

- 임기는 공단 설립일로부터 3년(경영성과에 따라 연임 가능)
- 연봉은 임용대상자의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비상임이사】

- 임기는 공단설립일로부터 3년(성과에 따라 연임 가능)
- 별도 급여는 없으며, 회의 참석수당 등 실비 지급

## 3 응모자격

「지방공기업법」 제60조 및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5조의 임원 자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임용예정 직위의 다음 자격요건 중 최소한 하나를 갖춘 경우 응모할 수 있음.

### 가. 임원 자격기준

#### 【이사장】

-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서 상임임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00인 이상 기업 또는 상장기업에서 상임임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공기업 및 경영학 관련 분야의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위에 준하는 자질을 갖추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사람

# 사 천 시 공 보

제510호(13)

## 【상임이사】

-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서 상임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00인 이상 기업 또는 상장기업에서 상임임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공기업 및 경영학 관련 분야의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위에 준하는 자질을 갖추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사람

## 【비상임이사】

- 세무사, 회계사, 법률전문가
- 경제관련 단체 임원
-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영, 관광, 환경, 체육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위에 준하는 자질을 갖추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 나. 직무수행요건(요구능력 수준)

구분	직무수행요건
이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관리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성 보유</li> <li>○ 차원 높은 공공시설물 관리 및 서비스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li> <li>○ 주민서비스 제고 및 공단 발전을 위해 새로운 비전과 목표 제시</li> <li>○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및 조직 역량강화를 선도할 수 있는 리더십 구비</li> </ul>
상임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기업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경영능력을 갖춘 사람</li> <li>○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친화력을 보유한 사람</li> <li>○ 효율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li> </ul>
비상임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기업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능력을 갖춘 사람</li> </ul>

# 사 천 시 공 보

제510호(14)

다. 연령, 학력, 성별, 거주지 : 제한 없음

라. 결격사유

〈 「지방공기업법」 제60조 및 공단 정관 제15조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00. 0. 00. ~ 0. 00.(토·일·공휴일 제외 / 접수시간 09:00~18:00)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는 09:00~18:00까지 접수하며,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우)00000 사천시 000로 00(000)

라.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이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① 지원서(사진부착) 1부 / 소정양식 ② 자기소개서 1부 / 소정양식 ③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소정양식 ④ 최종학력증명서(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근무처별), 자격증 사본 각 1부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소정양식 ⑥ 기타 추천위원회에서 적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 사 천 시 공 보

제510호(15)

## ※ 작성요령

- (자기소개서) : 지원동기, 경영능력, 자질 및 능력, 지방공기업에 대한 마인드, 윤리관 등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술(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 : 임용지원직위에 대한 추진 계획, 기관운영 방침 및 경영 혁신 계획 등을 포함하여 A4용지 5매 이내로 자유로이 작성

※ 지원서 등 소정양식은 사천시 또는 사천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작성 가능

## 5 심사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심사방법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

- 1차 시험(서류심사)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 1차 합격자는 개별 서면통지(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포함)
- 2차 시험(면접심사)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전문성, 리더십, 경영혁신, 노사 및 직원 친화력, 윤리관 등 심사
  - ※ 면접심사는 임원추천위원회 결정에 따라 생략될 수 있음.

나. 추천 후보자 결정 통보 : 개별 통지

## 6 기 타 사 항

- 경력·자격 등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합니다.
- 경력증명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지원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모 직위별 응시자가 모집인원의 2배수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 등 별도계획에 의거 선발합니다. 이 경우 기존 지원자는 추가로 지원서 제출 없이 기 제출된 서류로 심사하게 됩니다.

# 사 천 시 공 보

제510호(16)

-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임명권자가 임원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모집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 접수여부 미확인,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파기, 반환, 보존)합니다.
- 기타 사항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055-0000-0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서식 및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은 변경이 가능함.

# 사 천 시 공 보

제510호(17)

[별표 2]

##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제12조 관련)

직위명 : 이 사 장

### 1. 담당 직무

가. 법령·정관상의 담당직무

-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함.

나. 대내·외적 관계 관련 업무

- 대내적으로 공단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노동조합과 상호 동반자적 관계 유지
- 대외적으로 사천시·의회, 관련 행정기관 및 타 공기업·민간기업, 시민단체, 고객과의 우호적 관계 형성

다. 기관의 사업 수행 관련 업무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경영합리화를 추구하고, 창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시민)만족 도출

라. 조직내부관리 관련 업무

- 이사회 운영을 통해 합리적인 경영을 도모하고,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통해 조직역량을 제고
- 사건·사고의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노력

마. 그 밖에 관련업무

- 신규사업 영역의 개척과 선진 경영기법의 발굴·접목으로 조직발전을 도모
- 갈등과 분쟁의 사전 해결을 위해 노력

# 사 천 시 공 보

제510호(18)

## 2. 직무수행 요건

### 가. 조직내부관리 관련 업무

- 조직관리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성 보유
- 차원 높은 공공시설물 관리 및 서비스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
- 주민서비스 제고 및 공단 발전을 위해 새로운 비전과 목표 제시
-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및 조직 역량강화를 선도할 수 있는 리더십 구비

### 나. 기타 수행 능력요건

분야별		필요한 주요 능력	요구되는 능력 수준
조직 경영 관리	① 개혁성	혁신에 대한 이해·지식·경험	크게 요구
	② 리더십	조직 통솔력,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적 이해·지식·경험	크게 요구
	③ 기업가적 능력	대·내외 협상력, 경제적 효율성 추구·달성 능력	상당히 요구
	④ 전문성	지방공기업의 기업성·공익성에 대한 이해·지식·경험	크게 요구
	⑤ 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 능력	행정·경제·시설관리에 대한 이해·지식·경험	크게 요구
	⑥ 비전 제시 능력	조직의 통합된 미래목표 설정 및 직원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	크게 요구
	⑦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친화력이 있고,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질	상당히 요구
기본 자질	⑧ 청렴도	비위 사실이 없어야 함.	크게 요구
	⑨ 도덕성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부적절한 경력이 없어야 함.	크게 요구
	⑩ 준법성	직무수행과 관련 있는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함.	상당히 요구

- 학력 및 전공분야 : 학력 제한 없음

# 사 천 시 공 보

제510호(19)

○ 경력

-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서 상임임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00인 이상 기업 또는 상장기업에서 상임임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공기업 및 경영학 관련 분야의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위에 준하는 자질을 갖추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사람

○ 자격증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능력 : 국내·외 경영환경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능력

# 사 천 시 공 보

제510호(20)

## 임원의 직무수행요건

직위명 : 이 사

### 1. 담당 직무

#### 가. 법령·정관상의 담당직무

-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각 부서의 업무를 관장함.
- 비상임이사는 공단 경영에 대한 정책제안, 자문 등의 경영지원 업무를 수행함.
-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단의 주요 경영정책을 심의·의결함.

#### 나. 대내·외적관계 관련 업무

- 대상 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 사천시 및 사천시의회와의 원활한 관계 형성
- 이익집단, 고객(시민)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이끔.
- 노동조합과 상호 동반자적 관계 유지
- 내·외 고객(시민)과의 갈등 과 분쟁의 해결에 힘씀.

#### 다. 기관의 사업수행 관련업무

- 이사장을 보좌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의 업무를 관장
- 이사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 공단 경영에 대한 정책제안, 자문 등의 지원 업무수행

#### 라. 조직 내부관리 관련 업무

- 사업을 관장함에 있어 공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이루어 조직원과의 단결 도모
- 내·외 고객(시민)과의 갈등과 분쟁의 해결에 힘씀

#### 마. 기타 관련 업무

- 선진화된 경영기법의 발굴·접목
- 사건사고의 예방, 사후관리에 노력

# 사 천 시 공 보

제510호(21)

## 2. 직무수행요건

### 가. 조직내부관리 관련업무

#### 【상임이사】

- 공기업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경영능력을 갖춘 사람
-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친화력을 보유한 사람
- 효율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 【비상임이사】

- 공기업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자문능력을 갖춘 사람

### 나. 기타 수행능력 요건

#### 【상임이사】

분야별		필요한 주요 능력	요구되는 능력 수준
조직 경영 관리	① 개혁성	혁신에 대한 이해·지식·경험	크게 요구
	② 리더십	조직 통솔력,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적 이해·지식·경험	상당히 요구
	③ 기업가적 능력	대·내외 협상력, 경제적 효율성 추구·달성 능력	상당히 요구
	④ 전문성	지방공기업의 기업성·공익성에 대한 이해·지식·경험	크게 요구
	⑤ 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 능력	행정·경제·시설관리에 대한 이해·지식·경험	크게 요구
	⑥ 비전 제시 능력	조직의 통합된 미래목표 설정 및 직원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	크게 요구
	⑦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친화력이 있고,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질	크게 요구
기본 자질	⑧ 청렴도	비위 사실이 없어야 함.	크게 요구
	⑨ 도덕성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부적절한 경력이 없어야 함.	크게 요구
	⑩ 준법성	직무수행과 관련 있는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함.	크게 요구

# 사 천 시 공 보

제510호(22)

## 【비상임이사】

분야별		필요한 주요 능력	요구되는 능력 수준
조직 경영 관리	① 전문성	지방공기업의 기업성·공익성에 대한 이해·지식·경험	상당히 요구
	② 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 능력	행정·경제·시설관리에 대한 이해·지식·경험	상당히 요구
	③ 비전 제시 능력	조직의 통합된 미래목표 설정 및 직원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	상당히 요구
	④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친화력이 있고,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질	상당히 요구
기본 자질	⑤ 청렴도	비위 사실이 없어야 함.	크게 요구
	⑥ 도덕성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부적절한 경력이 없어야 함.	크게 요구
	⑦ 준법성	직무수행과 관련 있는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함.	상당히 요구

○ 학력 및 전공분야 : 제한 없음

○ 경력

## 【상임이사】

-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에서 상임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00인 이상 기업 또는 상장기업에서 상임임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공기업 및 경영학 관련 분야의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위에 준하는 자질을 갖추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사람

# 사 천 시 공 보

제510호(23)

## 【비상임이사】

- 세무사, 회계사, 법률전문가
  - 경제관련 단체 임원
  -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영, 관광, 환경, 체육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위에 준하는 자질을 갖추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사람
- 자격증 : 해당사항 없음
- 기타능력
-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능력
  - 기업회계에 대한 기본 소양

# 사 천 시 공 보

제510호(24)

[별지 제1호서식]

## 지 원 서(제13조 관련)

공모 직위명	
--------	--

사진부착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인 적 사 항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 민 번호	-			
		주 소				
		전 화	[주택]( ) -	[직장]( ) -	휴대폰	E-mail

	기 간	학 교 명	전 공	소재지	평점/만점	학 위
학 력 사 항	년 월 ~ 년 월	고등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교			/	
	년 월 ~ 년 월	대학원	(세부전공: )		/	
	년 월 ~ 년 월	대학원	(세부전공: )		/	
	최종학위 논문 주제					

병역 사항	병 역	필, 병역특례, 면제 (면제시 사유 : )				
	군 별	계 급	복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종 류	취득년월일	어 학	외국어명	점수	검정기관	
자 격 및 면 허							

	근 무 처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퇴사사유
경 력 사 항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510호(25)

(뒷면)

① 관련분야 논문발표 등 업적 (중요도 순 작성)

구 분	제 목	게재년월	게재기관
논 문			
기 타			

※ 주요업적을 기술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술(이하 동일)

② 연구 및 과제수행 주요업적 (중요도 순 작성)

과제명	주요내용	연구기간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③ 연구기술, 포상실적 등 기타 업적

④ 관련분야 특허·사업화 성공 등 국가발전 기여 업적

⑤ 국제화 활동 사항 (국제적인 공동과제 관리, 국제 전문위원회 참여 등)

위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하오며 일체 허위 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 사 천 시 공 보

제510호(26)

[별표 3]

##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제14조 관련)

구 분	세 부 기 준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업경영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 및 위기관리 능력</li> <li>· 노사화합과 기업의 성장·발전을 이끌 수 있는 능력</li> </ul>
대규모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화력을 바탕으로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소양</li> <li>· 건전한 기업윤리관, 청렴성, 책임관 및 솔선수범하는 실행력</li> </ul>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지향적인 의지</li> <li>·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li> </ul>
관련 분야(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험이나 전문적인 지식</li> <li>· 사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li> </ul>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실한 재무구조 유지 및 적정이윤 실현을 위한 기업적 마인드</li> <li>· 관련 산업을 통한 국민후생 증대를 실현할 수 있는 공익적 마인드</li> </ul>







# 사 천 시 공 보

제510호(30)

(별첨 1)

## 임원추천후보자 인적사항(제16조 관련)

성 명	출 생 (생년월일)	학 력	주 요 경 력
○○○ (○)			

- \* 출생지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기재(예 : 서울, 부산, 경기)
- \* 생년월일은 `○○.○○.○○(예 : `55.05.25)로 기재
- \* 성별은 성명 밑에 (男 또는 女)로 표기
- \* 주요경력은 최근경력 순으로 4~5개 정도를 기재

# 사 천 시 공 보

제510호(31)

(별첨 2)

## 임원 세부 추천사유(제16조 관련)

성 명	현 직	추 천 사 유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추천하게 된 사유를 간략히 기재함(100자 내외)

# 사 천 시 공 보

제510호(32)

[별지 제3호서식]

## 임원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제16조 관련)

### 1. 선발개요

가. ○○직위(성명 :○○○)의 임기만료(20○○.○.○)에 따른 후임자 선발

나. 선발방법

- 근거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의결
- 방법 : 공개모집, 추천방식,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 중 택일
- 공개모집 등의 세부내용

구분	기 간	인 원	접수기간	비고
1차 공개모집		공개모집 ○명 추천방식 ○명		
2차 공개모집				

다.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 20○○년 ○○월 ○○일(○요일) / 시간 / 장소

- 응모자 ○○명 중 ○명을 임원후보자로 추천

### 2. 모집개요

가. 1차 공고

- ○○신문(20○○.○.○)
- 행정자치부/사천시/기타 인터넷 등(20○○.○.○ ~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20○○.○.○ ~ ○.○)

나. 2차 공고 (필요시)

- ○○신문(20○○.○.○)
  - 행정자치부/사천시/기타 인터넷 등(20○○.○.○ ~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201○.○.○ ~ ○.○)
- ※ 접수기간 : 20○○.○.○부터 20○○.○.○까지(○일간)

# 사 천 시 공 보

제510호(33)

### 3. 응시자 현황 : ○명

응시번호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주요경력	비 고

\* 학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및 최종학력과 졸업년도를 기재

\* 주요 경력란은 가능한 자세히 작성하되, 경력별로 재직기간(부터~까지) 기재

### 4.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현황(총   명)

유 형	성 명 (성별)	소속 및 직위	주 요 경 력	비 고
시장 추천				
〃				
의회 추천				
〃				
〃				
이사회 추천				
〃				

# 사 천 시 공 보

제510호(34)

[별지 제4서식]

## 보 안 각 서 (제20조 관련)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1. 상기인들을 대표하여 본인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본래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업무수행 완료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시는 이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원장

(인)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사 천 시 공 보

제510호(35)

[별지 제5서식]

## 보안각서(참여자용)(제20조 관련)

○ 접수번호 :

○ 성 명 :

위 본인은 임원 공개채용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외부에 누출하지 않겠으며, 그러하지 못하였을 경우 공단이 위 본인에 어떠한 책임을 묻더라도 하등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고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사 천 시 공 보

제510호(36)

## 훈 령

사천시 훈령 제342호

사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안전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7년 7월 13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안전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사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안전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관제요원의 자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제요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 사 천 시 공 보

제510호(37)

제20조제2항제4호 중 “심의·조정 등” 을 “자문·조정 등” 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부시장” 을 “행정국장” 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전담부서 소속 국과장, 정보통신과장, 도로과장” 을 “정보통신과장,  
교통행정과장, 도로과장” 으로 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